

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2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5. 30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와 심의위원회 내 실 운영을 명시화하여 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을 높이고,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근거 상위 법령 명시(안 제1조)

나.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(안 제5조)

- 통합기금 재원의 공공성·수익성을 고려하여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

다. 위원회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(안 제7조)

- 심의사항 추가 및 금고 세부 예치현황(계좌번호, 이자율 등) 작성 보고
- 위원회의 활동 내역 관리 의무화

라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9조)

- 현행 2025년 6월 30일에서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

마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8조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제16조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19341호, 2025. 5. 2.)

라. 입법예고: 2025. 4. 21.~5. 12.(21일간) / 의견 없음

마.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: 2025. 5. 14.~5. 15. / 원안 가결

바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울산광역시 중구의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적립하여야”를 “적립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아니할”을 “않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활용하여야”를 “활용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추진하여야”를 “추진해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”를 “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정하여야”를 “정해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중요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4.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
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6.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, 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 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
3.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변경사항 등

제8조제2항 중 “관리하여야”를 “관리해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2025년 6월 30일”을 “2030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울산광역시 중구의 회계연도</u>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<u>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</u>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</u>」 제16조에 따라 <u>울산광역시 중구의</u> -----.</p>
<p>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<u>울산광역시 중구청장</u>(이하 “<u>구청장</u>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<u>적립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<u>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</u> <u>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----- ----- ----- <u>적립해야</u> ----- ----- ----- <u>않을</u> -----.</p>
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<u>활용하여야</u> 한다.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활용해야</u> -----.</p>

1. 2. (생략)

3.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
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4. (생략)

③ (생략)

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·이용) 구
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
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
관리하고, 통합기금운용계획에
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제6조(통합기금의 이자) ① 구청
장은 국·공채 이자율, 구 금고
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·예
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
한다.

② (생략)

제7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
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운영 및
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
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
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
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
다)를 둔다.

<신설>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추진해야

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·이용) --

----- 설치하되 여유자
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
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하고,
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

제6조(통합기금의 이자) ① ----

----- 정해야 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-

----- 다음 각 호의 -----

-----.

1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
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4.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5.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

항
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4.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6. 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<삭 제>

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
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
사항

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8조(회계공무원) ① (생략)

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
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
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
비치하고, 통합기금에 관한 증
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
다.

제9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 각
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
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,
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
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
고해야 한다.

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
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
을 관리해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
내용
3.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
변경사항 등

제8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 -----

----- 관리해야 -----
--.

제9조(존속기한) -----

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
한다.

----- 2030년 6월 30일-----
----.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작성자

- 소 속: 기획예산실
- 직 급: 지방행정서기
- 성 명: 이 영 기
- 연락처: (052)290-3075